

의안번호	제 470 호
의 결 연 월 일	2010년 3월 일 (제 288 회)

충청북도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제 출 자	충청북도지사
제출연월일	2010년 3월 2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470
----------	-----

제출연월일 : 2010년 3월 2일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비상구 폐쇄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화재시 다중이용시설의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소방대상물 관계자의 책임성 제고와 안전문화 조기정착을 위하여 소방관련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관련법령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 주요내용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운영
 - 관할 소방관서 설치 (홈페이지에도 신고창구 개설)
 - 신고대상 : 비상구 폐쇄, 훼손, 물건적치, 장애물 설치 등
 - 신고접수 방법 : 인터넷, FAX,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의 처리절차
 - 신고접수 → 현장확인 → 포상심의 → 포상금 지급
 - 현장확인 후 신고인에게 그 처리결과 통보
 -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대한 보안유지 철저
- 포상금 지급
 - 포상금액 : 1회 5만원
 - 포상심의 : “신고포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지급제한 : 본인과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월 50만원 이내로하고 연간 300만원 이내로 제한
 - 지급시기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문대조표 : 해당사항 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충청북도 조례 제 호

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석·적용상의 주의) 이 조례를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신고) ① 충청북도 도민은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하여 위반업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하 “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접수 및 처리) ① 서장은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밖에 일반사항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위반업소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첩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사하기 위해 위반업소 영업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에 신고포상심사위원회 (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한 5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신고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소속 주무과장이 되고 간사는 주무담당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 서장이 지방소방위 이상의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선정하되 해당 안전의 심사가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위원회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신고사항을 병합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등을 심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처리결과 통지) ① 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되, 신고한 내용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신고사항이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① 서장은 제4조에 따른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2. 이미 위법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
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소방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
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② 비상구 등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1회 포상금은 5만원으로 한다.

③ 본인과 가족(직계 존비속)으로 지급되는 포상금액은 월 5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④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서장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자의 보호) ① 서장은 신고자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예산의 확보) 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거래은행		계좌번호		
신고사항	신고일	년 월 일 시 분 초			
	신고기관				
	대상건물	업소명			
		주소 또는 위치			
	신고내용		선택 (체크)	<구체적 사실 기술>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위와 같이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소방서장 귀하					
※ 불임자료 ○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및 기타 증빙자료 등					

[별지 제2호 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

연번	신고 일자	신고 방법	신고인		신고내용	처리내용			포상금지금액 (지급일자)	비 고
			성명	연락처		현지 확인일자	조사결과	민원 회신일자		

주) 신고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센터(인터넷), 일반전화, 인터넷, FAX, 우편, 직접방문, 기타 등으로 기재

364mm×25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사항 확인조서

포 상 대상자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 고 내 용	접수일자						
	신고요지						
확 인 및 처 리 사 항	확인일자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처분일자)						
	위반업소 현 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담당자	소 속			직 급			
					성 명		

※ 붙임자료 : 사진 또는 (동)영상 및 기타 자료

주) 처분내역 란에는 행정처분, 과태료 등 처분사항 모두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등 신고포상 결정서

1. 포상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2. 포상심사내용

포상심사의뢰기관		심사의뢰서 접수일자	
신고내용 및 처리결과	신고요지		
	위반내용		
	위반법규		
	처분내역		
포상금 지급기준			

3. 포상결정내용

포상내용	
포상 결정사유	

[별지 제5호 서식]

제 ○ 차 신고포상심사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자	
2. 회의장소	
3. 참석자	외 명
4. 회의안건	1. 2. 3.
5. 회의결과	
6. 첨부서류	

위원장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조례제정 관련법령

【조례안 제정 근거】

-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지침 및 준칙(안) 시달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5172. 2009.12.15)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개정 2008.6.5>)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3.21, 2008.6.5>

1.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2.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그 밖에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

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6.5>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8조의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3.24>

1. 제9조제2항 · 제10조제2항 · 제12조제2항 또는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제53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5.8.4, 2006.3.24, 2008.6.5>

1.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 훼손 ·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 후단 첨부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난시설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제25조 (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소방기본법

제16조 (소방활동) 소방방재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은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로 하여야 한다.
- ③ 방화지구 안의 지붕·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제52조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53조 (지하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지하층의 구조 및 설비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제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지하층 부분만 해당한다)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단층의 부속 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 밀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30>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

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틀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그 지붕틀을 내화구조로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0.29]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③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목조 건축물의 구조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0.29]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전문개정 2008.10.29]

제61조(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법 제5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 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1.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고시원, 숙박시설(여관 및 여인숙은 제외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4. 공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다만, 건축물이 1층 이하이고,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 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용도로 쓸 것

- 나. 화재 시 대피가 가능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출구를 갖출 것
 - 다.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성능을 갖춘 복합자재[불연성인 재료와 불연성이 아닌 재료가 복합된 자재로서 양면 철판과 심재(心材)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를 내부 마감재료로 쓸 것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 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숙박시설 중 여관·여인숙,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전문개정 2008.10.29]

[별표 2] <개정 2009.2.6>

특정소방대상물(제5조관련)

1. 근린생활시설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류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기원·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다. 이용원·미용원·일반목욕장·찜질방 및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 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침술원·점골원·조산소·안마시술소 및 산후조리원
- 마. 정구장·탁구장·볼링장·헬스클럽장 또는 체육도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금융업소·사무소·부동산중개업소·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출판사·서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사. 종교집회장·공연장이나 비디오물감상실업·비디오소극장업(「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 및 나목의 시설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아. 제조업소·수리점·세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

자.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차. 사진관·표구점·학원(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되,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독서실·고시원·장의사·동물병원·총포판매소

카. 삭제 <2006.12.7>

타. 삭제 <2006.12.7>

파. 삭제 <2006.12.7>

하. 게임제공업,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 복합유통·제공업(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거. 의약품도매점 및 자동차영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 가목 내지 거목의 용도와 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 또는 층이 있는 것

2. 위락시설

가.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란주점

나. 주점영업(유흥주점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투전기업소 및 카지노업소

마. 무도장 및 무도학원

3.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가. 종교집회장 : 교회·성당·사찰·기도원·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나. 공연장 : 극장·영화상영관·연예장·음악당·서커스장·비디오물감상실·비디

오물소극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다. 집회장 : 예식장·공회장·회의장,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라. 관람장 : 경마장·자동차경주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체육관·운동장으로
서 관람석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마. 전시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바. 동·식물원 : 동물원·식물원·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사. 운동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
낚시터·골프연습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2) 체육관 :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운동장 : 육상경기장·구기경기장·볼링장·수영장·스케이트장·로울러스케
이트장·승마장·사격장·궁도장·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
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4.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가. 도매시장(도매시장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나. 소매시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전문점·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다. 상점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그에 소재한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1)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
곱미터 이상인 것

(2) 제1호 하목에 해당하는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
곱미터 이상인 것

라.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마. 철도역사(정비창 등 관련시설을 포함한다)

바. 공항시설(항공관제탑을 포함한다)

사.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5. 숙박시설

가. 일반숙박시설 : 호텔·여관·여인숙·모텔

나. 관광숙박시설 : 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
미니엄

6. 노유자(老幼者)시설

가. 아동관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영유아보육시설·유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경로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장애인시설 : 장애인재활시설·요양시설·이용시설·점자도서관
- 라. 그 밖의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의료시설

- 가. 병원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보건시설 및 요양소
-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장례식장

8. 공동주택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
- 나.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

9. 업무시설

- 가. 동사무소·경찰서 및 소방서·우체국·보건소·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
- 나. 발전소
- 다.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라. 일반업무시설 :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
- 마. 오피스텔 : 업무를 주로 하는 각 개별실에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건축물
- 바. 군사시설
- 사. 마을공회당·마을공동작업소·마을공동구판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 아.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

10. 통신촬영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공공용시설을 말한다)

- 가. 방송국 : 방송프로그램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
- 나. 전신전화국
- 다. 통신용시설
- 라. 촬영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11. 교육연구시설

- 가. 학교
 - (1) 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포함한다)·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교사(교실·도서실 등 교수·학습활동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체육관 및 「학교급식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시설
 - (2) 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 : 교사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 직업훈련소

라. 학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량계측소를 포함한다)

바. 도서관

사. 청소년시설 :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활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유스호스텔 : 청소년의 숙박 및 체제에 적합한 시설·설비에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 청소년의 수련활동지원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12. 공 장

물품의 제조·가공(세탁·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위생관련시설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13.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 냉장·냉동창고를 포함한다)

나. 하역장

14. 운수자동차관련시설

가. 항공기격납고

나. 주차용 건축물·차고 및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다. 세차장

라. 폐차장

마. 자동차검사장

바. 자동차매매장

사. 자동차정비공장

아. 자동차부속상

자. 자동차운전학원·정비학원

차. 주차장

카. 여객자동차운수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5. 관광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나. 야외극장

- 다. 어린이회관
- 라. 관망탑
- 마. 휴게소
- 바.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 사. 군휴양시설

16. 동식물관련시설

- 가. 축사(부화장을 포함한다)
- 나. 가축시설 : 가축용운동시설·인공수정센터·관리사·가축용창고·가축시장·동물검역소·실험동물사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다. 도축장
- 라. 도계장
- 마. 버섯재배사
- 바. 종묘배양시설
- 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아. 식물과 관련된 마목 내지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동·식물원을 제외한다)

17. 위생 등 관련시설

- 가. 분뇨 및 폐기물처리시설
- 나. 고물상
- 다. 폐기물재활용시설
- 라. 화장장
- 마. 납골당(제3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안에서 설치된 납골장을 제외한다)
- 바. 묘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18. 교정시설

- 가. 교도소(구치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을 포함한다)
- 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보호·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사용하는 것

19.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가. 위험물제조소 등
- 나. 가스시설 :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 중 지상에 노출된 산소 또는 가연성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탱크가 있는 가스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가스제조시설

-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 가스저장시설

(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의 저장허가를 받아야하는 시설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설치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3) 가스취급시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20. 지하가(地下街)

지하의 공작물안에 설치되어 있는 점포·사무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속하여 지하도에 면하여 설치된 것과 그 지하도를 합한 것

가. 지하상가

나. 터널 : 지하·해저 또는 산을 뚫어서 차량(궤도차량용을 제외한다) 등의 통행을 목적으로 만든 것

21. 지하구

전력·통신용의 전선이나 가스·냉난방용의 배관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집합수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하공작물로서 사람이 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출입이 가능한 것 중 폭 1.8m 이상이고 높이가 2m 이상이며 길이가 50m 이상(전력 또는 통신사업용인 것은 500미터 이상)인 것

22. 문화재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건축물

23.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안에 제1호 내지 제20호의 것 중 2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건축물로 보지 아니한다.

가. 관계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서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 또는 시설

나. 주택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에 필수적인 용도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용도

(1) 건축물의 설비·대피 및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2) 사무·작업·집회·물품저장·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3) 구내식당·구내세탁소·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후생복리시설 및 구내소각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비 고

1. 내화구조로 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이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출입목적으로 만든 창이나 출입구를 말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

획되어 있는 경우(이하 "완전구획"이라 한다)에는 그 구획된 부분을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2.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미터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미터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콘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방화셔터 또는 감종방화문이 설치되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목의 1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감종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

4. 위 별표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이 지하가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당해 지하층의 부분을 지하가로 본다. 다만, 다음 지하가와 연결되는 지하층에 지하층 또는 지하가에 설치된 방화문이 자동폐쇄장치·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닫히는 구조이거나 상부에 드렌처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지하가로 보지 아니한다.